

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, 8월 2일부터 실시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(7. 24)

▣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)는 오는 8월 2일부터 「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」가 시행된다고 7월 22일 밝혔다.

○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,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동물복지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, 지난 2012년 2월에 「약사법」 및 「수의사법」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이다.

▣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후에 조제받거나,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(도매상 또는 동물약품국)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○ 그간 동물약품은 축산농가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·사용할 수 있어 오·남용에 의한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발현 등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

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다.

*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기 시행중

▣ 농식품부에서는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97개 성분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, 향후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* 적용대상 : 마취제(17성분), 호르몬제(32성분), 항생·항균제(20성분), 백신(13성분), 기타 신경·순환계 약물(15성분) 등 97개 성분 (1,100여 품목)

▣ 아울러,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천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시행 후 1년간은 면제키로 하였다.

○ 또한,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,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·벽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.

▣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소량의 동물약품을 효율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약물 오·남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, 불필요한 약물 구매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,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문제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, 축산농가, 동물 소유자 및 동물약품 유통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※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문의는 7월 29일부터 운영되는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(www.evet.or.kr) 또는 8월 1일부터 24시간 콜센터(대한수의사회 ☎1877-7002) 참조

◆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종류

1.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(17종)

Acepromazine / Atipamezole / Azaperone / Detomidine / Embutramide / Hydroxybromide glutamate magnesium salts / Isoeugenol / Medetomidine / Metomidate / Pentamethylenetetrazol / Phenothiazine / Suxamethonium / Tiletamine + Zolazepam / Tricaines / Xylazine / Yohimbine / Yohimbine + Naloxone

2.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(32종)

Actea + Aletris / Altrenogest / Androstone / Bovine somatotropin / Buserelin / Carbetocin / Chorionic gonadotropin / Cloprostenol / Dinoprost / Estradiol / Estrogen + Chorionicgonadotrophin / Etiproston / Fertirelin /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/ Gonadorelin / Gonadotrophin / Gonadotrophin equine serum / Lecirelin / Luprostio / Medroxyprogesterone / Melengestrol / Osaterone acetate / Oxytocin / Porcine somatotropin / Progesterone / Prostaglandin / ProstaglandinF2α / Serotonin + Ergometrine / Serum gonadotropin + Chorionic gonadotropin / Testosterone / Tiaprost / Vetrabutrin

3. 항생 · 항균제 유효성분(20종)

Cefovecin / Cefquinome / Ceftiofur / Chlortetracycline / Danofloxacin / Doxycycline / Enrofloxacin / Erythromycin / Kitasamycin / Marbofloxacin / Minocycline / Oleandomycin / Oxytetracycline / Roxithromycin / Sedecamycin / Spiramycin / Tetracycline / Tilmicosin / Tulathromycin / Tylosin

※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.

4. 생물학적 제제(13종)

축종	종류	대상 질병	비고
개	단일	광견병	
개	복합	디스토펙퍼+전염성간염 +렙토스피라	
개	복합	디스토펙퍼+전염성간염 +파보바이러스+렙토스피라	
개	복합	디스토펙퍼+전염성간염 +파라인플루엔자 +파보바이러스+렙토스피라	
개	복합	디스토펙퍼+전염성간염+파라인플루엔자+파보바이러스+렙토스피라+코로나바이러스	
개	단일	렙토스피라	
소	단일	브루셀라	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.
소	단일	탄저	
소	복합	탄저 + 기종저	
돼지	단일	일본뇌염	
야생동물	단일	광견병	
닭	단일	뉴캐슬병	
닭	복합	뉴캐슬병+전염성기관지염	

※ 생물학적 제제는 “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”에 따라 한글 표기

5.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(15종)

Atropine / Chlorpheniramine / Dexamethasone / Flumethasone / Flunixin / Furosemide / Heparin / Hydrochlorothiazide / Isoxsuprine / Meloxicam / Phenylbutazone / Pimobendan / Prednisolone / Ramipril / Temocapril

※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.